

제279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1. 4. 2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
미 래 · 복 지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1년 4월 20일
전문위원 서 선 옥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1 - 29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1년 4월 6일
- 라. 회부일자: 2021년 4월 6일

2. 제안이유

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존치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(안 제2조의2)
 - 2021.06.30. → 2026.06.30
- 나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2조제1항, 제6조, 제7조, 제8조제2항, 제9조제2항, 제10조제3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해당부서: 자원순환과

라. 기 타:

- 1) 입법예고(2021. 2. 17. ~ 3. 11.) 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존치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
-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
 - 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존치의 필요성이 있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 더 연장¹⁾하고

1) 2021. 3. 29.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“기금존속기간 5년 연장안”에 대하여 원안가결

-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의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는 것으로

○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,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,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- 그 간의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운용실적과 향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맞춰 기금 존속기한 연장, 그 밖에 조례 상 용어의 표현 및 띄어쓰기 등 관련 조항들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

※ 연도별 기금 운용현황 - 기금운용 개요 및 대여실적 별첨

(단위: 백만원)

연도별	조 성 액				집 행 액				잔액
	계	전입금	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이자 수입	계	비용자성 사업비	융자성 사업비	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	
2015년까지	2,288	645	1,497	146	1,673	0	1,673	0	615
2016년도	59	0	46	13	36	0	36	0	23
2017년도	77	0	66	11	59	0	59	0	18
2018년도	32	0	20	12	11	0	11	0	21
2019년도	31	0	13	18	4	0	4	0	27
2020년도	32	0	17	15	24	0	24	0	8
2021년도	35	0	18	17	56	0	56	0	△21
계	2,554	645	1,677	232	1,863	0	1,863	0	691

참고**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개요 및 대여실적****□ 2020년 기금결산**

(단위 : 원)

2019년도 잔액	당해연도 증감액			2020년 말 조성액(잔액)
	계(증 감)	조성액(수 입)	사용액(지 출)	
704,940,651	8,867,754	33,373,754	24,506,000	713,808,405

□ 기금예치 현황(20.12.31.기준)

- 예치은행 : 우리은행
- 예치년도 : 2020년
- 예치금액 : 713,808,405원 ('20.12.31.기준)
 - 정기예금 : 439,707,690원 (2021.4.3. 만기/ 고정금리 1.98%)
230,000,000원 (2021.6.2. 만기/ 고정금리 1.87%)
 - 공금예금 : 44,100,715원 (고정금리 1.56%)

□ 수입현황(2020년)

- 이자수입 : 16,034,754원
- 융자금회수수입 : 17,339,000원
- 총수입액 : 33,373,754원

□ 대여현황(2020년)

- 지원대상 : 대학생 자녀
- 인 원 : 7명
- 금 액 : 24,506,000원
 - ※ 예산지원 형태 : '기금'으로 예산편성 후 신청 시 대여

□ 대여한도

-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상자녀 2인 이내
-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음

□ 학자금 상황

- 대여금은 무이자,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- 자퇴, 편입, 퇴직시 잔여 대여금은 퇴직금에서 일시상환
 - ※ 퇴직 전 미상환금 제외 후 퇴직금 정산
- 매년 기 대여자녀에 대한 '재·휴학 증명서' 징구로 재학상태 확인

□ 관련규정

-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

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현황

(2013년 ~ 2020년)

년 도	기금명	대여금액(원)	사용내역	비고
2013년	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	30,725,500 [11명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013. 1학기 학자금 대여(7명) - 19,845,500원 ◦ 2013. 2학기 학자금 대여(4명) - 10,880,000원 	
2014년	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	34,991,000 [10명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014. 1학기 학자금 대여(6명) - 22,984,000원 ◦ 2014. 2학기 학자금 대여(4명) - 12,007,000원 	
2015년	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	3,088,000 [1명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015. 1학기 학자금 대여(1명) - 3,088,000원 	
2016년	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	36,072,500 [10명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016. 1학기 학자금 대여(6명) - 23,512,500원 ◦ 2016. 2학기 학자금 대여(4명) - 12,560,000원 	
2017년	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	59,100,000 [18명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017. 1학기 학자금 대여(9명) - 30,400,000원 ◦ 2017. 2학기 학자금 대여(9명) - 28,700,000원 	
2018년	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	10,600,000 [3명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018. 1학기 학자금 대여(3명) - 10,600,000원 	
2019년	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	4,142,000 [1명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019. 2학기 학자금 대여(1명) - 4,142,000원 	
2020년	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	24,506,000 [7명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020. 1학기 학자금 대여(2명) - 6,176,000원 ◦ 2020. 2학기 학자금 대여(5명) - 18,330,000원 	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